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0. 5. 6.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0년 5월 6일(수) 14:00~18:3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손 병 두 위 원 장

(제112호~제118호)

최 준 우 위 원

이 상 복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0년도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2020년도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보고

2020년도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의결안건 제112호 『코로나19에 따른 분반기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위 원) 미국 법인 중, 이번에 분기보고서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 외에 미국 법인은 없었는지 궁금함

(보고자) 한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법인 4개사 중 3개사는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음. 해당 회사만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분기보고서까지 같은 기한에 제출한다면 부담이 가중될 거라 판단하여 분기보고서 제출기한

도 1개월 연장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나, 사업보고서 등 심사 시 가장 높은 수준의 심사단계를 적용하여 엄중히 검토할 예정임

(위 원) 한국 시장에 상장된 홍콩 법인 중 이번에 제재면제 또는 추가연장을 신청한 3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함

(보고자) 실제 홍콩 소재 기업들은 모두 지난 증선위에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2개사는 증선위에 신청해서 제출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5영업일 연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임

(위 원) 현재 매매거래정지 상태에 있는 (주)화진과 (주)이엠앤아이 가 이것을 악용하는 것 아닌지 우려됨

(보고자) 실제 사업보고서 연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작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받거나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으며 그럴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음

(위 원) 형식요건이나 실질요건을 확인할 때 악용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교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이 듦. 결국 본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보고자)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분기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악용 우려가 낮은 편이며, 사업보고서 추가연장의 경우 상장사 1개사에 대해서만 허용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심사 시 한국거래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침

(위 원) 사전적으로 연기신청을 받았는데 비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신청을 안 하고 그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사후적으로 심사의 제재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이 판단되면 제재수위를 면제하는 등 사전에 신청한 것과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주려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궁금함

(보고자) 비상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사유로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연되었다면 면제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임

(위 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확인이 좀 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함

⇒ 원안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3호 『(주)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위 원) 제재가 경우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에서 다르게 결정되는 등 수평적 비례원칙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됨. 기관·금전·신분 제재의 수평적 수위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위원장) 제재와 관련한 적정성 평가에서는 신분 제재보다는 기관과 금전 제재 쪽이 최근 추세였으나, 그 균형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동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함

⇒ 원안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4호 『(주)엘시티피에프브이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을 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1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진술인)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받은 처분 결과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진술 하고자 함. PFV사업은 페이지컴퍼니를 뜻하며 법상 사무실과 임직원도 둘 수 없고, 저는 그 대표를 맡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 이사회도 위탁한 자산관리회사인 AMC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회에서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됨. 정관에서 1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AMC가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10억 원 이상의 것만 이사회에 부의 되어있음을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듯이 현재 서울에 거주하면서 회의가 있을 때만 부산에 갔었기 때문에 AMC로부터 관련 사항을 전달받지 않으면 내용을 전혀 알 수도 없었음. 간혹 AMC의 일방적인 업무 처리도 있었으며, 특히,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였음. 금년 1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허위용역에 대한 실질적 관여는 없었으며 알고 있지도 못하였다는 것임. 전임자들의 경우 PFV에 관련 직책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PFV를 관장하는 지주회사의 실권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실권을 발휘하여 허위용역을 시켰기 때문에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임자의 불법행위로 현임자가 '해임권고'를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함

(위 원)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에 대한 어느 부분이 납득 할 수 없다는 것인지 궁금함

(진술인) 해임이 자발적이라면 수긍하고 받아들이겠지만, 허위

용역과 관련한 '해임권고'라는 점은 불명예를 받는다는 점임

(위 원) 페이퍼컴퍼니도 법인이며 대표이사직을 맡은 2014년 이후 수행하여 왔음에도, 주주총회의 주요안건 중 하나인 재무제표 승인을 이사회를 관장하면서도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였는지 궁금함

(진술인) 이사회는 대주단인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과 보증을 해 준 시공사에서 이사로 와 있고 주주 몫으로 한 사람과 저, 총 6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저보다 대주단과 시공사의 재무제표 검증 능력이 뛰어났기에 그들을 믿었었고 특별한 이의 없이 통과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위 원) 대표이사라면 최소한의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함. 실제로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 회사도 있었고 이사회도 있었는데, 대표이사로서 대금 지출행위에 대해 결재가 있었는지 궁금함

(진술인) 앞서 말했듯이 허위용역이라는 것도 검찰조사를 통해 알았으며, 정관에도 10억 원 이상만 이사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10억 원 미만은 AMC가 알아서 하게 되어 있고 AMC가 자금집행을 하려면 대주단의 승인을 받고 시공사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시공사가 최종적으로 결재를 해야 함

(위 원) 재무제표는 AMC에서 작성했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함

(진술인) 재무제표가 공인회계사를 통해 작성되면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우리 이사들은 다른 회사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그것을 각 회사에서 확인을 받고 이의가 없다면 바로 주총에 올려서 주총 승인을 받는데,

(위 원) 2016년, 2017년 횡령·배임을 인지하였을 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동일한 형태로 해당 재무제표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는지 질의함

(진술인) 그 당시 재무제표가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답변함

※ 진술인 퇴장

(위 원) 종합해보면 ‘나는 페이퍼컴퍼니의 대표로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로 감사인의 역할이 중한데도 한공회에서는 감사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제재면제로 감리하였음. 미지적 사유를 보면 ‘검찰 수사가 개시된 이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범위제한을 이유로 변형된 감사의견 한정을 표명하였고’라고 되어있는 것처럼 감사인이 2010년부터 계속 회사를 감사를 했는데 2013년에만 이자비용 과소계상을 이유로 ‘한정’ 의견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적정’ 의견이었음. 그런데 한공회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감사인이 이러한 허위 용역계약

을 판단하기가 불가능했는지 궁금함

(보고자)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실질적으로 횡령이 일어났었으며, 건설회사이다 보니까 오류가 손익에 미치는 것이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음. 조서를 보면 1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증빙 및 용역결과물을 살피는 등 여러 가지 절차는 다 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허위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공모를 하였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음

(위원장)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재량규정임에도 우리는 그것을 마치 귀속규정인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면 거의 모든 것을 중단하는 관행은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며, 현실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증거 등은 수사권에 비해서 제약이 많아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비슷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되니 내부적으로 그 판단에 대한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보고자) 감리집행기관인 금감원, 한공회와 함께 여러 사례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함

- 회사의 조치 중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감사 해임권고'는 제외하기로, 수정하여 의결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5호 『(주)이노와이즈(舊 (주)화신테크)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위 원) 감사인이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보고서 수령을 계속적으로 요청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회사가 지방소재 중소기업으로 우량한 기업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설명하고 하는데 이것이 회계법인에서 제대로 회계처리하기 어려운 이슈인건지 궁금함

(보고자) 이것이 평가 이슈로 간다면 평가의 시점 등 여러 가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회사 입장에서 종속회사가 현재 적자이지만 향후 좋아질 거란 기대감에 약간 미루는 경향이 있었고 회계기준에서도 명확한 점이 없으니 이 정도는 자기들 판단의 영역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종속기업이 2016년에 지적해서 3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너무 많이 손상이 됐었고 구조조정까지 검토한 단계였고 이런 것은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에도 구조조정을 검토하거나 이런 것은 손상징후로 명시하고 있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 간과한 것으로 알고 있음. 또 금액이 크다보면 평가비용이 많이 드니까 감사인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회사가 평가해 와라” 했는데 감사인도 회사의 평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됨

(위 원)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이고 이 회사가 상당한 손실이 난다는 사실 자체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을 계상을 안 해서 실익이 없는 건데도 중대한 과실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며, 2018년 별도재무제표는 어떻게 되어있었는지 궁금함

(보고자) 2018년에 145억 원 중에서 36억 원만 남기고 반영하였음

(위 원) 2018년에 반영하면 소급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것은 실익이 없는 중대한 과실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직무정지건의 6월'의 조치는 당연하다고 생각됨

○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함

⇒ 원안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6호 『2018 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등 의무위반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위 원) 지적된 회계법인들의 규모가 궁금함

(보고자) 9개 회계법인 중 1곳만 등록법인이고 나머지는 회계사가 10명에서 20명 이내의 규모임

(위 원) 조치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보고자) 현재 조치인 '지정제외점수'라는 것이 실제로 금감원에서 지정을 해 줄 때 30점당 1개사를 지정 안 해 주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타격은 없겠지만 누적시 달라질 수 있음

(위 원) 사업보고서를 지연제출한 5개사의 지연일이 모두 같은데, 시스템 상 문제는 없었던 건지 궁금함

(보고자)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지정제외점수 20점 받은 2곳은 지연 제출한 것이 맞지만, 1개 회계법인은 당일에 제출한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시스템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아 다시 등록했던 것을 감안하여 1단계 감경하였음

(보고자) 1곳은 당일에 제출한 것으로 착각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올린 것이고 2곳은 저년 6시 이후에 등록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다음날 아침에 다시 제출한 것임

(위 원) 실제로 상장 등록법인이 아니면 지정제외점수가 불이익으로 작동하는지 궁금함

(보고자) 비상장법인 지정은 받을 수 있을 것임

○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함

⇒ 원안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7호 『(주)에이치비테크놀러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기획감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위 원) 검찰의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금융당국으로서 사안에 따라 감리를 할 수 있게 제도보완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제시 됨

(위 원)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제척기간은 5년, 감사조서 보존기간은 8년이고 외부감사법상의 과징금 제척기간은 8년, 감사조서 보존기간은 8년, 과태료 부과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증권발행제한 조치도 제재처분이지만 여기에 대해 제척기간을 두는 것이 아마 애매하기 때문에 두지 않았던 것 같음. 따라서 과징금 제척기간, 과태료 제척기간,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동일선상의 제재수단인 증권발행제한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이나 보존기간에 연계해서 향후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그리고 제재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함

- 회사의 조치 중 '증권발행제한' 조치는 제외하기로, 수정하여 의결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8호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진술인) 보도자료는 회사의 주주와 투자사에게 개발상황 등을 알림이 목적이며,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은 아님

(위 원)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과장된 보도자료를 만든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듭

(진술인) 의도적 과장은 없었음. 회사의 활동 가능성이나 전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경영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됨. 보도자료 중 허위·과장된 내용이 있어 그것이 주가변동에 영향이 있었다는 입증 자료는 없어 보이며, 보도자료 배포 행위 자체를 두고 주가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면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됨

※ 첫 번째, 진술인 퇴장

※ 두 번째(마지막),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진술인) 회사 입장에서 정상적인 IR활동과 주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생각됨. 공시부분에 있어서는 금감원에서 확대 해석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위 원) 무엇을 확대 해석했다는 건지 궁금함

(진술인) 조합과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인 관련을 말함

(위 원) 회사와의 인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진술인) 인수한 것임

※ 두 번째(마지막), 진술인 퇴장

(위 원) 진술인이 주장하는 허위·과장된 광고는 부정거래에 해당되므로, 대표이사가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함

⇒ 원안 의결함

(17시 51분 정회)

(18시 02분 속개)

□ 의결안건 제119호 『○○○(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위 원) 조사 착수경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였는지 궁금함

(보고자)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이 있었는데 2019년 8월에 전 대표이사가 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조성 내역의 거짓이라든지, 신사업 추진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로 부정거래가 이루어졌고 69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적이 있었음

(위 원) 조치이유 내용 중 주식의 99.84%를 사채업자 및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나왔는데 이 정도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함

(보고자) 이렇게 많은 주식이 한꺼번에 제공된 점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항임

(위 원) 그리고 회사에서는 '전임 경영진이 주석 안 한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아무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줬다'고 하면서 확약서를 하나 보냈었는데,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전 대표이사가 현 최대주주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알리지 않았습시다'라고 했는데 이 확약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함

(보고자) 법인의 공시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공시의무 위반 책임을 피할 수 없음

(위 원) 무자본 M&A 경우는 필연적으로 공시의무위반이 수반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음

(보고자) 구체적인 자금조성같은 부분들을 숨기고 들어오게 됨

(위 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의견을 말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함

⇒ 원안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0호 『(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위 원) 검찰에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심리결과도 알려주었는지 궁금함

(보고자) 알려주었음. 검찰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였지만 감독원 조사 중에 검찰에서 이미 부정거래에 대해 기소한 상태였음. 동일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부정거래를 제외하고 시세조종혐의만 조사하였음

(위 원) 혐의자 주장 중에 장 후반에 집중 매수가 이뤄진 것이 시력 문제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함

(보고자) 이건의 경우 장 중에 전체적으로 주문이 나오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종가관여시간대에 이상때때주문이 많은 것을 질문하니깐 '눈이 안 좋아서 종가시간대에 많이 집중하게 되었다'고 변명을 한 것임

○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함

⇒ 원안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1호 『(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함

⇒ 원안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2호 『(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 제123호 『(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위 원) 상장폐지 대상이면 과징금 부과대상인데, 상장기업의 경우 과징금 부과 조치와 증권발행제한 조치 중 어느 쪽이 제재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함

(보고자) 증권발행제한은 공모발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모방식으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모발행을 할 기회가 많지 않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제재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함

(위 원) 2017년 반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이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제출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부분인지 궁금함

(보고자) 조사 착수가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음. 그동안 조사방식은 선입선출방식으로 운영되어왔는데, 이번에 작년도 사업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미제출과 올해 미제출 건을 통합하여 일괄 보고하여 신속하게 제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함

⇒ 각각 원안 의결함

2) 보고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6호 『(주)○○○ 등 40개 종목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긴급조치 결과보고』, 제17호 『(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등 긴급조치 결과보고』, 제18호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긴급조치 결과보고』 을 일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함

⇒ 원안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0년도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폐회를 선언함